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준수사항에 불법촬영물 등 소지·보관시청 금지 등〉
■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15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특별준수사항에 디지털 데이터 및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의 접근금지 추가	3
2. 특별준수사항에 불법촬영물 소지 등 금지 추가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은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9.
3.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음.

성범죄에서 현실 세계의 시·공간적 한계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준수사항만으로는 재범 요인의 제거·약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들이 늘고,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할 필요 있음.

이에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

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소지·보관·시청 금지’ 및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고자 함(안 제32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III. 검토의견

1. 특별준수사항에 디지털 데이터 및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의 접근금지 추가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 준수사항에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의 ①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 캐릭터, 아이디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 ②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접근의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2. (생 략)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 ----- ----- ----- ----- ----- ----- ----- ----- ----- 1. 2. (생 략) 3. ----- -----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가. 특정인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금지

-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호 작용하는 방식의 메타버스¹⁾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활용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며 논란이 된 바 있음²⁾.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및 아이디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아바타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스토킹³⁾, 계정 도용을 통한 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현행 처벌법규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1)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가상·증강현실(VR·AR)과 같은 가상융합기술(XR;eXtended Reality)의 활용을 강조하여 '확장 가상세계'로 정의되기도 한다.
정준희, '이슈와 논점 :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과제', 입법조사처, 2021. 7.

2) 한국일보, "'남성 아바타에 성폭행 당했다"... 현실 닮아가는 메타버스 성범죄', 2022. 9. 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0711570005513?did=NA>)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오지원,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은」, 국회의원 신현영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22.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아바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에 대한 강간·유사강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⁵⁾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468, 민형배의원 대표발의)과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⁶⁾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686, 윤영덕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468,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제13조의2(가상공간에서의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이 조에서 “아바타”라 한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2.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16686,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아바타”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2. ~ 3.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2. 제4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나. 특정인의 물건에 대한 접근 금지

- 몇 년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체액테러’ 사건⁷⁾에서는 체액을 피해자의 물품에 묻힌 경우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어 입법공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음.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특정인의 물품을 이용하거나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물건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⁸⁾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7) 중앙일보, 몸이면 성범죄, 옷은 재물손괴...외신도 조롱한 '韓 정액테러', 2021.8.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31968>)

한겨레, 현관에 뿌려도 텀블러에 넣어도 성범죄 처벌 못 하는 '체액 테러', 2024.3.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4241.html>)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07,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27,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13조의2(물건·물질에 의한 음란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689,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제13조제2호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그 밖의 배송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검토의견

- 보호관찰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등에게 처분되는 것으로⁹⁾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 관련 피보호관찰자들의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률 현황>

구분	위반법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년 보호관찰	성폭력처벌법	6.0%	3.5%	0%	0%	12.8%
	청소년성보호법	7.5%	3.6%	13.5%	2.5%	7.2%
성인보호 관찰	성폭력처벌법	4.0%	4.5%	4.1%	2.9%	4.8%
	청소년성보호법	4.5%	6.4%	9.1%	3.4%	4.9%

자료 : 법무부(2023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특히,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¹⁰⁾들의 원등록범죄와 재등록 범죄를 비교한 결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이 강간, 강제추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¹¹⁾ 통계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재범률>

원등록 재등록	총계	강간 등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기타 성범죄
총계	6,334	1,564	2,603	102	974	41	1,050
	(%)	24.7%	41.1%	1.6%	15.4%	0.7%	16.5%
강간 등	905	506	281	11	36	3	68
	(%)	(55.9%)	(31.1%)	(1.2%)	(4.0%)	(0.3%)	(7.5%)
강제추행	3,036	762	1,857	21	103	8	95
	(%)	(25.1%)	(61.2%)	(0.7%)	(3.4%)	(0.3%)	(3.1%)
통신매체 이용음란	107	14	21	52	8	2	10
	(%)	(13.1%)	(19.6%)	(48.6%)	(7.5%)	(1.9%)	(93.4%)
카메라 등 이용촬영	1,082	110	161	10	694	6	101
	(%)	(10.2%)	(14.9%)	(0.9%)	(64.1%)	(0.5%)	(9.3%)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67	10	10	1	16	15	15
	(%)	(14.9%)	(14.9%)	(1.5%)	(23.9%)	(22.4%)	(22.4%)

자료 : 법무부(2023 성범죄백서)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¹²⁾은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11)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재등록 사건 6,334건을 원등록사건과 대비하여 분석한 통계로, 디지털 성범죄 재범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수가 가장 많은 강간 등 및 강제추행과 디지털 성범죄자의 수를 비교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부과되는 ‘일반적 준수사항’과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 특성에 따라 법원에 의해 별도로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으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에 특정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 금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회에 위협이 되는 신종 성범죄인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및 비접촉 방식의 성범죄 등의 범죄 가능성을 줄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특별준수사항은 대상자의 범죄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전제되는 범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

한다.

-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며¹³⁾, 개정안의 법문 중 특정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는 현재까지 법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개념이고, 특정인의 물건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각 용어가 포함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향후 회부될 것으로 보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범죄의 법률화 및 전체 법체계에서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법사위 회부 성폭력범죄 처벌법 상 각 용어의 정의 등>

용어	대표발의	의안번호	용어의 정의 및 처벌행위
온라인 캐릭터	민형배의원	2115468	<u>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아바타)를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u>
물건	백혜련의원	2200607	<u>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u>
	이수진의원	2202527	<u>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u>
	박상혁의원	2203689	<u>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u>

○ 또한, 개정안은 ID라는 외국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13) 정진연,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헌성 검토」, 보호관찰 제13권제1호(2013), p. 1. 참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서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함¹⁴⁾에 따라, 유사입법례는 ID를 법문상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¹⁵⁾을 감안하여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폭넓게 규정하여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경우 온·오프라인상의 접근금지를 같은 호에 규정¹⁶⁾하여 법체계상 혼란이 초래되고,

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 판」, 법제처, 2021. p. 59.

15)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제청장 및 지방국제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 4. (생략)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톱킹행위자에 부과하는 잠정조치로 온·오프라인 상 접근금지를 별도의 호에 구분하여 규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물건’의 개념이 민법상의 물건¹⁷⁾인지, 디지털 관련 물건을 의미하는 지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7)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특별준수사항에 불법촬영물 소지 등 금지 추가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 준수사항에 불법촬영물등의 소지·보관·시청 금지와 불법촬영물 등 소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휴대폰 등 제출 요구 및 불법촬영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에 따른 것을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 ----- ----- ----- ----- ----- -----.
<신설>	10. <u>불법촬영물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보관·시청 금지</u>
<신설>	11. <u>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휴대폰 등 인터넷 기기 제출 요구 및 불법촬영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u>

○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들 스스로가 용의자를 특정해 주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각각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¹⁸⁾.

한편, 현재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법 제14조제3항제10호¹⁹⁾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9조제8호²⁰⁾에 근거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성범죄를 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출석 면담시에 보호관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것”,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18) 박소현, ‘이슈와 논점 :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입법조사처, 2024. 9.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설치하지 말고, 그 설치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개정안은 위와 같이 재판에서 선고되는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음란 합성물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사행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안되고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²¹⁾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성범죄자들만이 아닌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휴대폰 기기 제출 요구 등의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부과 대상자들의 범위의 적정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²²⁾.

참고로 법원은 성범죄를 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음.

21) 정진연, 앞의 논문, p.306~316. 참조.

22) 현행법의 특별준수사항은 모든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성범죄와 관련된 특수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는 취지임. 만약 관련 대상자 범위를 제한하려는 경우 항을 분리하여 성범죄에 특유한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1대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에 한정)²³⁾,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²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제1항제2호²⁵⁾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68,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가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둘째, 준수사항 위반이 바로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²⁶⁾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2의 편집물²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²⁸⁾의 소지·보관·시청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의 입법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중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²⁹⁾과, 전자장치부착명령과 결합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위반³⁰⁾의 경우는 위반이 곧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사례가 존재함.

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셋째, 개정안은 ‘휴대폰 등 인터넷 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에 따라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른 법률에서는 ‘휴대폰’이 아닌 ‘휴대전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며,

개정안이 언급하는 휴대폰 등 인터넷 기기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테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컴퓨터’를 염두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위 기기 등을 총칭할 수 있는 용어인 「형법」³¹⁾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³²⁾의 ‘모바일·스마트기기 등’의 개념을 참고하여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구입·시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범죄이므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가 적합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1) 「형법」 314조(업무방해)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075